

[별표 2] <개정 2016. 8. 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거목·폐목·허목 및 고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50 이하	23,000
2	50 초과 ~ 250 이하	70,000
3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4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5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6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7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8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9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10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1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2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3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4	10,000 초과	330,000

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50 이하	10,000
2	50 초과 ~ 100 이하	29,000
3	100 초과 ~ 150 이하	48,000
4	150 초과 ~ 200 이하	67,000
5	200 초과 ~ 250 이하	70,000
6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7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8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9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10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11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12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13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4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5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6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7	10,000 초과	330,000

다. 방염처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원)
1	30 이하	6,000
2	30 초과 ~ 50 이하	15,000
3	50 초과 ~ 100 이하	29,000
4	100 초과 ~ 150 이하	48,000
5	150 초과 ~ 200 이하	55,000
6	200 초과 ~ 250 이하	65,000
7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8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9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10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11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12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13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14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5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6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7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8	10,000 초과	330,000